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418호
2. 발 의 자 : 김춘곤 의원
3. 발의일자 : 2023. 1. 2.
4. 회부일자 : 2023. 2. 9.

### II . 제안이유

- 최근 담배 및 술 외에 신종 마약류 등 유해약물이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해약물이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III . 주요내용

1.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2.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적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5.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입법예고(2023. 2. 14. ~ 2. 19.) 결과 : 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1월 2일 김춘곤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418호로 발의되어 2023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약물 오·남용에 따르는 피해를 줄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마약의 인터넷 유통이 성행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sup>1)</sup>
- 특히 최근 5년간 전국의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마약 사범은 2022년 4,203명으로 2018년 1,392명의 약 3배에 달하며 10대 마약 사범 또한 2018년 104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약 183%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1] 최근 5년간 전국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경찰청)

(단위: 명)

연도	총 검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2018	8,107	104	1,392	1,804	2,085	1,393	1,196	133
2019	10,411	164	2,422	2,499	2,207	1,572	1,295	252
2020	12,209	241	3,211	2,803	2,346	1,563	1,801	244
2021	10,626	309	3,507	2,437	1,781	1,235	1,229	128
2022	12,387	294	4,203	2,817	1,764	1,352	1,829	128

1) 보도자료: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아니다... 30% "마약 마음먹으면 쉽게 구할 것"(한국일보, 2023.2.11.)

- 오늘날 마약 거래가 사회관계망 및 인터넷을 통해 생활공간에서까지 손쉽게 이루어져 학생들이 유해약물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이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자 한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을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실행계획 수립 등(안 제5조), 교육실적조사(안 제6조), 예방교육의 실시 등(안 제7조), 위탁·지원·홍보·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11조) 등을 규정하여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책무에 대한 검토(안 제3조)

- 안 제3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sup>2)</sup> 안 제3조

2)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에서 교육감에게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것은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3)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실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계획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023년도 학교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내 학교에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정책·안전기획관-1513, 2023. 2. 10.).

**[표-2] 서울시교육청 학교급별·영역별 안전교육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교육시간	유치원	13	10	8	10	6	2	2
	초등학교	12	11	8	10	6	2	2
	중학교	10	10	10	10	6	3	2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약물 사용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 협력 대응체계 구축, 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 교육자료 개발 영역의 사업을 추진 중인 바(체육건강문화예술과-18028, 2022. 10. 13.),

안 제5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4) 홍보 등에 대한 검토(안 제10조)

- 안 제10조제2항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영업자 등에 대해 유해약물 용어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마약김밥’, ‘마약치킨’ 등 마약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상표등록의 경우 특허법원은 ‘마약배개’에 대해 “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고<sup>3)</sup> 이에 따라 특허청은 현재 식품 또는 아동용품의 경우에만 ‘마약’이 들어간 상표등록을 반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현행법상 ‘마약’이라는 용어를 상호나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등록이 없어도 가능한바,<sup>4)</sup> 국회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약 등 용어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특허법원 2019.11.07. 선고 2019허4024 판결

4) 보도자료: '마약김밥'부터 '마약침대'까지...일상 파고든 그 이름, 금지 가능할까?(머니투데이, 2022.10.27.)

**[표-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발의일자	발의자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
제16794호	2022.8.23.	권은희의원 등 10인	-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	소관위심사
제17882호	2022.10.21.	서정숙의원 등 10인	-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	소관위접수

○ 따라서 안 제10조제2항에서 교육감이 영업자 등에게 유해약물 용어 사용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허법원의 ‘마약배개’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법적 효과를 담보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제2항이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어떠한 강제력이나 구속력, 처벌규정 없이 권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조문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sup>5)</sup>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20, 2023. 2. 13.).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이준석 2180-8263	입법조사관	김한수 2180-8269
----------	------------------	-------	------------------

5) 권고는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음.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해짐.